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개정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제51조(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)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. 1. ~ 43. (생략) <u>44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</u> 45. (생략) <신설> <신설>	제51조(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~ 43. (현행과 같음) <u>44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, 제한물질 취급 신고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</u> 45. (현행과 같음) <u>46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또는 신고</u> <u>47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</u>